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1 | 2026. 7. 20. (2026. 7. 13. ~ 2026. 7. 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 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가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 되도록 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의원 등 11인)**」,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무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실시되며, <재경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재정경제부) 6
-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8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8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9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10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1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13
-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1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15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16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16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 17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17
-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10인) 18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의원 등 10인) ·· 1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 19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19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6인) 2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2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1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 **[방송통신(TMT)]** AI웨어러블 기기의 확산과 법적 쟁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 - 2026. 7. 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비전도 제시
-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전력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육성
-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지방 기업·근로자에 인센티브 제공
- 청년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2026-07-14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였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로 제시하면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 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힘

정책 목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기본 방향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 추진
-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반드시 달성
-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를 통한 구조적 문제 대응

“3대 분야 - 6대 과제”

중동전쟁 이후 전략

①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① 통합대응체계 구축 및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②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③ 주거 안정 지원

②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① 확실한 공급망 구축
- ②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③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③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AIDC, 피지컬 AI)
- ②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③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④ 지방주도성장 강화

- ① 지방경제 성장동력 구축
- ② 지역 생활여건 강화
- ③ 지방성장기반 마련

구조적 문제 대응

⑤ 양극화 극복

- ① AI와 고용 재편 대응
- ② 청년도약 뒷받침
- ③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성장과 재기 지원
- ④ 노동시장 격차 완화

⑥ 구조혁신 본격 착수

- ① 생산적 금융 대전환
- ②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 ③ 인구감소 대응 및 인재양성
- ④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 ⑤ 과감한 규제 합리화
- ⑥ 안전한 국가 구현

국가기후위기대응
위원회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발굴

2026-07-16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음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음.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음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하였음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임

또한 ①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②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③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하였음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S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광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임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의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하였음

대상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7-14 시행

숙박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숙박업자가 접수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에 숙박요금표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7-15 시행
----------	--------------------	---------------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보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에는 그 자동전송으로 기록·보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오존 주의보의 발령과 해제의 기준값이 동일하여 발령과 해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존 주의보의 해제기준을 오존 농도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추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의 기준과 해당 기준 미준수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4. ~2026.08.2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7호)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위해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 등 개정 사항에 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①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적용 범위 확대 (안 제3조의5, 제4조제3항)
- ② 사업재편 필요업종 선정 위한 조사, 권고 등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2, 제8조의3, 안 제8조의4)
- ③ 신용위험평가 특례에 대한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2)
-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특례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17조의3)
- ⑤ 자금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의2)

※ 문의처 : [산업통상부 기업정책팀](#) (전화: 044-203-4232, 팩스: 044-203-472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3. ~2026.08.24.
-------	------------------	-----------------------------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필요

- ① 연차유급휴가의 분할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 (안 제33조의2조)
 -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전화: 044-202-7973, 팩스: 0503-8803-20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4. ~2026.08.24.
-------	--------------------	-----------------------------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전화: 044-202-8997, 팩스: 044-202-8090\)](tel:044-202-8997)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3.
~2026.08.2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개선 및 단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재원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①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 명확화 (안 제4조)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택지’의 조성면적을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면적의 합으로 명확히 하고, 주택건설용지가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명확히 함

② 폐기물 광역처리 시 관계 지방정부 간 협의의무 신설 (안 제4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조성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부담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가됨
-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 여부 결정에 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③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안 제5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재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 이내로 상향함

④ 동일 부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시 행정절차 단축 (안 제10조의2, 제18조)

-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의 변동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만 증가함에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함

-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나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및 위치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에서 제외함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전화: 044-201-7406, 팩스: 044-201-7420)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5.
~2026.08.24.

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8, 팩스: 044-201-5576)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5.
~2026.08.24.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부여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세부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① 통신판매중개업자 인용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7조제3항제7호)

- 기존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통신 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수정함

②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사항 신설 (안 제5조의2)

-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거짓 표시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고지하도록 세부 항목을 신설함

③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기관 변경 (안 제7조의2제5항제1호)

- 원산지 교육 실시 기관을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함

④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위임 신설 (안 제9조제1항제2호의4)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의2)

- 명확하지 않은 위반횟수 산정 기간의 시작점을 '처분시'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 객관성을 확보함

⑥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2)

- 법률 개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전화: 044-201-2277, 팩스: 044-868-9219\)](tel:044-201-2277)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15.
~2026.08.24.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① 금융회사 및 자산 범위 확대 등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3, 안 제2조의4, 안 제2조의5, 안 제3조, 안 제3조의2,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 수범대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
- 금전으로 국한되었던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포함

② 가상자산 형태로 편취된 자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지원 등 (안 제6조, 안 제9조)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화: 02-2100-2975, 팩스: 02-2100-2946\)](tel:02-2100-297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1인)

2026-07-14 발의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과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국회 운영은 임시회 소집 시기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어 국회 운영의 탄력성이 부족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원내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장기간 지연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제도 역시 지나치게 긴 심사 기간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인 신속한 입법 처리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정기회 기간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회를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확립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함

법제사법위원회

소비자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10인)

2026-07-14 발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을 지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일정 기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을 수행해 온 소비자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다수 소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소비자가 간소화된 채권신고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증거를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 인정과 피해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업자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가 대부분 사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소비자집단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보전명령, 전문가 사실조사, 법정 외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2026-07-13 발의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ESG) 정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EU(CSRD), 일본(SSBJ),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를 법정 공시로 의무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기업들이 법률상 세이프하버(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 나아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30조원 이상이라는 협소한 공시 대상 설정(약 58개사)과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3년 유예(2031년)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이탈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반 투자자의 피해와 중소기업의 공급망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3인)

2026-07-13 발의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6-07-16 발의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5인)

2026-07-13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포상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침해사고 원인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들어 사이버상의 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고 이전 예방 체계 구축과 사후 대응 체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수준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ISMS 제도 정비 및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정작 정보침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은 ISMS 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하여 보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존 의무를 강화하여 책임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47조제2항, 제47조의6제1항 및 제48조의4제5항·제7항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6-07-15 제출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완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2026-07-15 발의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게임콘텐츠와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여 수익을 얻는 불법행위로 게임산업계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음. 현행법은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을 불법게임물 유통 등의 행위로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바,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2026-07-15 발의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2026-07-14 발의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함. 아울러,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2026-07-15 발의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의원 등 10인)	2026-07-16 발의
---------------------	--------------------------------------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거점임.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입지 여건 악화, 인력 부족, 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기반시설 정비, 기업 유치, 인력 확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 구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6-07-13 발의
---------	--	---------------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7인)

2026-07-13 발의

최근 글로벌 항공·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2026-07-15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6인)

2026-07-16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범위가 원청 사업주와 거래하는 모든 하청 사업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용자 범위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2026-07-14 발의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을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2026-07-15 발의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체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체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체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체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체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체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2026-07-16 발의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 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제도가 부재하여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감리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아 현장 관리 및 감독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5조제11항)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7/20(월) 09:00	- 간사 선임의 건
정무위	전체회의	7/21(화) 10:00	- 긴급 현안 질의
재경위	전체회의	7/23(목) 14:00	- 법안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7/21(화) 15:00	-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등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	7/22(수) 10:00	- 제2차 청문회(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관련)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20(월) 10:00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토론회	김남근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20(월) 14:00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AI 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7/20(월) 14:00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	조배숙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21(화) 07:30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추진 방향	박주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1(화) 14:00	제11회(2026) 4차 산업혁명 AI Korea 대전	이성권·김종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3(목) 10:00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김현정·안도걸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7/23(목) 17:00	반도체·AI ‘어닝 서프라이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용태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7/23(목) 18:20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 103차 정책세미나	이종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7/13(월)	「금주의 보고서」 제2026-25호(통권 제57호)	국회도서관	
	7/15(수)	「금주의 서평」 제2026-27호(통권 제786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15(수)	「Data&Law」 제2026-7호(통권 제45호)	국회도서관	
	7/15(수)	「금주의 서평」 제2026-27호(통권 제786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14(월)	형사	민간투자사업(BTO) 협약변경과 자문역 채용을 뇌물공여로 문제 삼은 사건에서 대형 엔지니어링 기업 전·현직 대표이사 등 의뢰인 전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7/15(수)	방송통신(TMT)	AI웨어블 기기의 확산과 법적 쟁점
7/16(목)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1. - 2026. 7. 14.)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